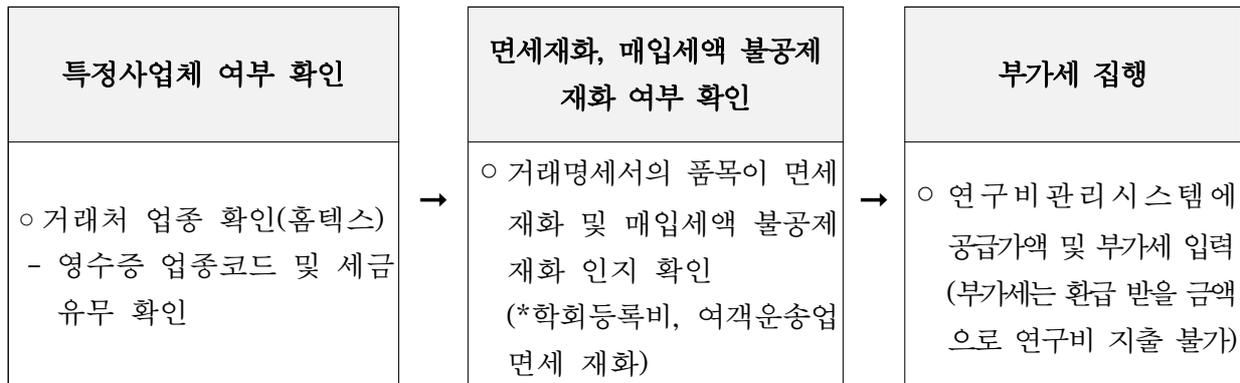


### 1. 업무개요

- 목적 : 회계관련 법령 및 집행방법 이해
- 시기 : 상시
- 관련법령 또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관련부서 : 연구지원팀

### 2. 업무흐름도

#### ■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카드전표) 집행



### 3. 주요내용

#### [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 및 국가R&D 위탁과제는 부가가치세부과 대상임
  -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협약서 내 결과물 귀속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과물의 소유권이 타 기관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연구과제 대상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 확인서 제출)

## 4. 업무처리 유의사항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음 (예시) 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 회의비, 식대,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 구입 등
-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특정 물품이나 사업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구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0원’ 으로 청구해야 함 (예시)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 간이과세자, 휴·폐업 사업자

### 〈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구분	면세대상
연구 및 기술 용역	<b>부가가치세법 제26조</b> <b>【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b>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b>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b> <b>【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b>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13. 6. 28. 개정)
	<b>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b> <b>【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b> (2013. 0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기 타	<b>부가가치세법 제26조</b> <b>【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b> ① 항의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